

상법 제652조 소정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

김 동 민*

<차례> _____

I. 서 론

III. 대상 판결의 평석

II. 소송의 경과

IV. 결 론

주제어 :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설명의무, 고지 의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국문초록> 상법은 보험자에게 약관의 '설명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의 '고지 의무' 및 위험변경증가 사실의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상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영역에 속하는 위험을 일일이 조사하여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계약의 성립 전에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토록 하고, 계약의 성립 후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 사실을 통지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책임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 의무"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내지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이며, 피보험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 내지 증가한 경우 보험자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인정한 의무이다.

그런데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하나의 보험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어느 하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사실을 통지하였을 때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이러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판단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법학박사(Ph. D.).

- 논문접수일(2025.02.09), 심사개시일(2025.02.18), 게재확정일(2025.02.28)

대상 판결은, 원고(보험계약자)가 2006. 6. 26.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0.경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0. 13. 피고를 상대로 위와 동일한 피보험자의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10. 24.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그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 보험계약”을 증개한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안에서, 이러한 통지가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통지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동일한 통지도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시하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의 판단기준은 재고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첫째,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의 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이러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둘째,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의 직업변경과 같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 이를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i) 보험자의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범위, ii) ‘보험설계사’에게 위험변경증가 통지의 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iii) 관념의 통지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민법상 ‘표시주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 iv) 보험계약자 등의 악의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 v) 보험금에 비례하는 ‘보험료 산출의 균형성 여부, vi)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내포된 ‘효과의사’에 따른 효력의 차이, vii) 실무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절차’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의 일반이론 및 상법 규정의 해석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판단의 근거와 기준 및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I. 서 론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에게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의 ‘고지의무’ 및 위험

변경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상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영역에 속하는 위험을 일일이 조사하여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계약의 성립 전에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토록 하고, 계약의 성립 후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책임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대상 판결에서 쟁점이 된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하나의 보험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사실을 통지하였을 때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상에게 어떠한 범위까지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원고(보험계약자)가 2006. 6. 26.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0.경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0. 13. 피고를 상대로 위와 동일한 피보험자의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10. 24.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안에서, 이러한 통지로 인하여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동일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동일한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시하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의 판단기준은 재고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등이 현저한 위험의 증가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보험자는 이러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의 직업변경과 같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 이를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i) 보험자의 약관의 명시 및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범위, ii) 관념의 통지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민법상 '표시주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 iii) 보험계약자 등의 악의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 iv) 보험금에 비례하는 '보험료 산출'의 균형성 여부, v)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내포되어 있는 '효과의사'에 따른 효력의 차이, vi) 실무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절차'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의 일반이론 및 상법 규정의 해석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소송의 경과

1. 사실의 개요

(1) 사실관계

1)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6.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상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소외인은 2015. 10.경 일반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체결

이후 원고는 2017. 10. 13. 피고와 피보험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원심 판시 운전자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따라 2017. 10. 24. 신규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는 소외인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확인한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를 하여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에서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하고 이러한 직업변경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

여 보험료를 증액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2017. 11.분부터 증액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3) 교통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소외인은 2018. 9. 21. 경북 군위군 소재 중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척추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경추골절,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배변장애 등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서 금 409,938,111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에 규정된 ‘계약 후 알릴 의무(직업변경 사실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감액하여 금 292,043,800원을 지급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7. 10.경 피고에게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한 것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 기재된 통지의무 이행에 해당한다. 설령 위와 같은 통지를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더라도, 피고는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알게 된 2017. 10.경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피고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직업변경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원래의 보험금으로서 금409,938,11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상 직업변경시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조회할 권한과 통지수령 권한이 없는 별건 보험계약(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에게 유선상으로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이어서 직업변경 사실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에 규정된 ‘계약 후 알릴 의무(직업변경 사실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감액된 보험금으로서 금 292,043,800원을 지급하면 된다.

2.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결¹⁾ - 원고 승소

1) 원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상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직업이 ‘경찰관’에서 ‘화물운전사’로 변경되었다고 보험설계사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고지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 받은 뒤 2017. 11.경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하여 그 보험증권에도 위와 같이 기재하였고, 2017. 11.분부터 직업변경 사실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보험계약”에 관하여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고지한 보험설계사는 원고와 수십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로서, 소외인의 직업이 원래 경찰관이었고,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이외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라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달라지는 관계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증액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보험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명시적인 직업변경 사실의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여 보험자가 직업변경을 이유로 한 각종 조치를 취한 경우에게까지 재차 서면으로 보험계약을 특정하여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 서울중앙지법 2021. 7. 13. 선고 2020가단5040903 판결

(라) 따라서 원고가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보험료 등을 증액하여 변경한 2017. 10.경의 시점에, 원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상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보험금의 지급 범위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한 이상 피고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및 삭감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정해진 보험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17,894,311원(= 409,938,111원 - 292,043,8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2018. 11. 29.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2. 5.부터 2021.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1. 6. 8.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심 판결²⁾ - 원고 패소

1) 피고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공무원에서 영업용 운전자로 그 직업을 변경하였다는 점은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을 달리 정하게 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영업용 운전자이었다면 적어도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상법 제652조가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되고, 이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2) 서울중앙지법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 판결.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에게 설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상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당시 소외인은 공무원이었다가 이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이후 2017. 10. 13.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10. 24. 신규 발급한 보험증권에도 소외인의 직업이 공무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에 원고는 2017. 10.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업무를 한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전화로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말하였고 운전자보험의 보험료를 증액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소외인이 2018. 9. 21.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손해사정을 하는 과정에서야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해지(보험금삭감)를 통지한 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과 그 이후에 체결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은 전혀 별개의 보험계약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자보험의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이나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혹은 증가에 관련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7. 10월 말경 운전자보험이 아닌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상해급수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경우 2급(보험금 409,938,111원)에 해당하고 화물차 운전기사인 경우 3급(보험금 292,043,800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2018. 11. 29.자 피고의 계약 해지 및 감액 통보에 따라 상해급수 2급인 공무원에 대한 보험금이 아니라 상해급수 3급인 화물차 기사에 대한 보험금 292,043,800원으로 감액되었

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감액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은 피고의 변제로 소멸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 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대법원 판결³⁾ - 원심의 파기·환송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관련 업 무를 담당한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상법 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 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가 이러한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이때 하나의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 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자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에 차이가 있는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 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3)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은 물론이고,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상법 제652조 또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0여 일이 지나 신규로 발급받은 보험증서에 소외인의 직업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말하였고, 보험설계사는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가 최초로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 소외인의 직업에 관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였던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서 고지된 직업 등 소외인에 대한 정보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도 그대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원고로서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이외에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과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알릴 당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도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사실을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한하여서만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할 이유가 없다.

(다) 피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후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에서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하고 보험요율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증액하였다. 위 보험설계사가 작성한 모집경위서에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상 직업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직업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담당자는 다른 보험설계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 내역을 조

회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연락해서 변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보험설계사는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이외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도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해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최초 보험증권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이 기재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의 통지 당시 보험계약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소외인의 직업변경을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을 서면으로 피고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이는 약관상의 통지에 관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데에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내부 자료에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여 문서화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서면에 의하여 알리지 않았더라도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에 관한 원고의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마)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상법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Ⅲ. 대상 판결의 평석

1. 개 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내지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라고 한다. 상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영역에 속하는 위험을 일일이 조사하여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계약의 성립 이후 현저히 변경이나 증가된 위험을 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계약의 해지 및 보험금 지급책임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통지의무는 피보험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 내지 증가된 경우에, 보험자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한 의무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불이익을 주는 일종의 ‘간접의무’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하나의 보험자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직업변경으로 인한 위험의 증가 사실을 통지하였을 때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러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대상 판결은, 원고(보험계약자)가 2006. 6. 26.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0.경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0. 13. 피고를 상대로 위와 동일한 피보험자의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10. 24.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안에서, 이러한 통지가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통지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이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동일한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시하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재고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원심 판단의 내용과 근거를 비교 분석하면서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i) 보험자의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범위, ii) 판례의 통지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민법상 ‘표시주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 iii) 보험계약자의 악의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 iv) 보험금에 비례하는 ‘보험료 산출’의 균형성 여부, v)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내포된 ‘효과 의사’에 따른 효력의 차이, vi) 실무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절차’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의 일반이론 및 상법 규정의 해석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그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

■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설명의무의 개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는 청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이를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는

경우에 계약의 내용이 되는 보험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청약서에 의해 청약을 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내용을 미리 알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법정한 것이다(상법 제663조).

동 규정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규정으로서, 편면적 강행규정의 성질을 갖는다(상법 제663조). 다만 상법은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보험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보험계약자의 취소가 없는 한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보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⁴⁾

(2)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사안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피고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직업변경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내용에 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 대상 판결의 검토

사안의 경우,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그 직업을 공무원에서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였다는 점은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를 달리 정하게 되는 사실에 해당하여, 피보험자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영업용 운전자였다면 적어도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

4)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제15판, 박영사, (2008), 639면.

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그 직업을 공무원에서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한 사실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는 통지의무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보험자인 피고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24조의 규정을 계약의 내용으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반박하는 원고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학설 및 판례의 입장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중요한 약관의 내용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과 보험금액,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이라고 할 수 있다.⁵⁾ 여기서 설명의무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규범설’의 입장에서 상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다만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다.⁶⁾ 그러나 사고발생 위험의 변경·증가와 관련된 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하여는, 보험약관의 규정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경우, 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복하거나 구체적으로 부연하는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이러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가 통설이고 타당하다.⁷⁾

5)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판결.

6) 양승규, “위험증가통지 의무 위반과 보험자의 계약 해지”, 「손해보험」 통권 제520호, 손해보험협회, (2012), 52면.

7) 최기원, 전제서, 675면.; 한창희,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의 위반과 보험자의 책임”, 「상사판례연구」 제4권, 박영사, (2000), 408면.

판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즉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⁸⁾

4) 소 결

가계보험 형태에 가입한 일반인의 경우처럼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은 피보험자 직업의 변경 자체가 보험사고 위험의 증가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보험자로부터 “이러한 직업의 변경은 위험변경증가에 해당하여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라는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자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 어느 하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통지하면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한 통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각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화재보험계약에서 ‘피보험 건물의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보험계약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약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상 판결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사실은, 화재보험에 있어서 ‘건물의 구조변경’ 내지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자동차의 구조변경’ 등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등

8)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이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계약 별로 각각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보험자의 설명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피보험 건물의 구조 변경·개축·증축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⁹⁾ 또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등은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652조에서 이미 정하여 놓은 통지의무를 자동차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는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¹⁰⁾

생각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에서 일정한 사실을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를 현저한 위험 증가 사유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상태의 발생이나 변경이 현저한 위험의 증가에 해당하는지를 보험자가 계약체결시에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하기는 곤란하므로, 보험자에게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¹¹⁾ 따라서 대상 판결의 경우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와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각 보험계약마다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직업변경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자 등이 각 보험계약 별로 피보험자의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9)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10)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11) 同旨: 대법원 2011. 7. 11.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2.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 관

1) 의 의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¹²⁾ 이러한 통지의무는 피보험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 내지 증가된 경우에 보험자로 하여금 위험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보험자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인정한 의무로서, 그 위반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지 못하게 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도록 하는 일종의 ‘간접의무’이다.¹³⁾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이 이러한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상법 제652조 제1항 후문), 보험계약자 등이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

12)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제15판, 박영사, (2008), 674면.

13) 손주찬, 「상법(하)」 제9정증보판, 박영사, (2001), 567면.;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6), 149면.;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9판, 박영사, (2007), 534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¹⁴⁾ 따라서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이미 보험요율에 적용하여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이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보험자의 면책사유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경우도 동일하게 해석된다.¹⁵⁾ 여기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로서, 위험의 객관적 변경 또는 증가를 말한다.

2) 입법취지

상법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을 기초로 하여 계약의 체결을 전후해서 각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으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한다.¹⁶⁾ 여기서 보험계약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는, 계약상 보험목적에 관한 위험의 증가나 변동이 사고발생의 개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이다.¹⁷⁾ 즉 이러한 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후에 그 목적물에 발생하는 위험의 현저한 증가나 변동이 사고발생을 및 위험단체의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험자에게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고, 동시에 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종 의무 상호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¹⁸⁾

14)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33253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15)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48682 판결.

16) 김원규, “보험계약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재해석과 입법과제”, 『법학연구』 제48집, 한국법학회, (2012), 303면.

17) 김원규, “상법상 약관교부·명시의무와 고지·통지의무와의 관계”, 『한양법학』 제22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1), 226면.

18) Hans-Leo Weyers, Manfred Wandt, Versicherungsvertragsrecht, 3. Aufl., Luchterhand, (2003).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는 사고발생의 개연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위험상태가 변경되어 동 계약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보험제도의 기초를 뒤흔들게 되어 결국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상 객관적 위험상태가 변경되면 종전의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¹⁹⁾ 보험자에 의한 위험의 인수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행하여지므로, 만일 이렇게 선택된 위험이 변경 내지 증가한다면 균형은 깨지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익의 균형을 계약체결 당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 계약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²⁰⁾ 이러한 통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변경됨으로써 최초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불공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자는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리'에 근거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다.²¹⁾

3.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의 판단 기준

(1) 서 설

대상 판결은, 원고(보험계약자)가 2006. 6. 26. 피고(보험자)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0.경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0. 13. 피고를 상대로 위와 동일한 피보험자의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10. 24. 신규 발급된 운전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사안에서, 이러한 통지가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통지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나의 보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들 각

19) 김원규, 전개논문, 227면.

20) ER. Hardy Ivamy, General Principles of Insurance Law, 5th ed., Butterworths, (1986), p.124.

21) 同旨: 김원규, 전개논문, 228면.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이와 동일한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자는 감액된 보험금이 아닌 원래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상 판결의 판시사항과 관련하여, i) ‘보험설계사에게 위험변경증가 통지의 수령권이 있는지 여부, ii) 관념의 통지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민법상 ‘표시주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 iii) 보험계약자 등의 악의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 iv) 보험금에 비례하는 ‘보험료 산출의 균형성 여부, v)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내포된 ‘효과의사’에 따른 효력의 차이, vi) 실무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절차’의 불완전성 등이 문제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민법의 일반이론 및 상법 규정의 해석을 토대로 하여 그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해결을 위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험설계사”의 통지수령권 인정 여부

1) 의 의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란, 보험자는 물론이고 보험대리상이나 보험중개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보험업법 제2조 제8호), 특정 보험자에 종속되어 있는 사용인을 말한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의 사자(使者)로서 고객의 발굴과 소개 및 가입 촉진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다.²²⁾ 이러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 및 통지에 대한 수령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종래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²³⁾ 대법원도 「구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는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보험설계사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²⁴⁾

22) 石田滿, 「保險業法」, 文眞堂, (2011), 619面.; 최기원, 전게서, 621면.

23) 손주찬, 전게서, 567면.; 최기원, 전게서, 623면.; 양승규, 전게서, 149면.; 정찬형, 전게서, 534면.

2) 대상 판결의 검토

대상 판결의 경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로 발급받은 보험증서에 소외인의 직업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바로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말하였고, 보험설계사는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피고가 최초로 발급한 운전자 보험증권에 소외인의 직업에 관하여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였던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서 고지된 직업 등 소외인에 대한 정보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도 그대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 대상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를 매개하여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는 간접적이거나 이행된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통지하고 보험설계사가 이를 보험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보험계약자 등의 이러한 통지의무에 대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실무적으로 보험계약자는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위험변경증가 사실의 통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보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싶어도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의하여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실태임을 감안해 보면,²⁵⁾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설계사도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²⁶⁾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면서 이를 소개하고 가입을 촉진시키는 보험설계사의 신분적 지위와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설계사 사이에는 고도로 축적된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질서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측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선의

24)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대법원 2008.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25) 김창중, 「재판자료」, 제53집, 법원행정처, (1991), 132면.

26) 同旨: 맹수석,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제도의 법적 쟁점-일사전속제 및 교차모집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1권 제3호, (2007), 285면.

의 일반 보험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위험변경증가 사실의 통지에 대한 수령권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다.²⁷⁾ 현행법상 해석으로도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이 정형화된 대중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설계사에게 계약대리권은 물론이고 고지 및 통지의 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3) 관념의 통지에 대한 민법상 “표시주의 이론”의 적용

1) 문제의 제기

대상 판결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자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해 준 보험설계사에게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하면, 당연히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담당자에게도 그러한 사실이 알려져서 양 보험계약에 대하여 함께 통지가 된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상황임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즉 대상 판결의 경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로 발급받은 보험증서에 소외인의 직업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말하고 이후 보험설계사가 피고에게 이를 전달한 사정만으로, 원고로서는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이외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원고가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알릴 당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한하여서만 직업변경을 통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표시주의 이론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27) 김원규, “21C 선진금융환경 하에서의 보험설계사의 고지·통지수령권과 보험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3집, (2011), 251면.

2) 대상 판결의 검토

일반적으로 법률사실의 종류에 관한 민법 이론에 의하면,²⁸⁾ 보험계약자의 ‘위험변경증가 사실의 통지’(상법 제652조 제1항)는, 행위자의 일정한 의식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표현행위” 중에서 특히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해당할 것이다.²⁹⁾ 민법상 의사표시에서는 당사자가 의욕한 바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만,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바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일정한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표현행위’에도 행위능력이 필요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³⁰⁾ 판례의 입장이다.³¹⁾ 그리하여 “표현행위” 중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에 근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상 당사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하여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를 고려하는 절충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알 수가 없고 표시행위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표시상 효과의사를 중심으로 하여 법률관계가 정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행위는 표의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것이 외부에 표시행위로서 표현되지 않으면 법률적 의미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상대방이 표의자가 갖고 있는 내심의 의사를 알기 위해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측되는 것에 의존하는 수

28) 민법상 “법률사실”은, 인간의 정신작용에 기인하는 ‘용태’와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구분되고 ‘용태’는 인간의 의사가 외부로 표출되는 ‘외부적 용태’와 내심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 ‘내부적 용태’로 나뉘어 진다. “외부적 용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을 위하여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표시’와, 그 법률효과가 행위자의 의사에 기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준법률행위’로 구분되고, “준법률행위”는 일정한 의식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표현행위’와 오직 사실적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행위’로 나뉘어 진다.

29) “표현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알리는 ‘의사의 통지’,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 일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감정의 표시’ 등이 있다. 여기서 “의사의 통지”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갖는 ‘최고’(민법 제15조) 및 ‘거절’(민법 제16조 제2항) 등이 있고, “관념의 통지”는 ‘채권양도의 통지’(민법 제450조) 및 ‘승낙연착의 통지’(민법 제528조 제1항) 등이 있다.

30) 지원립,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140면.

31) 대법원 1997. 6. 27. 95다40977·40984 판결. 동 판결에서는 ‘관념의 통지’인 채권양도의 통지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밖에 없다. 그러므로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표시행위 위로부터 추측되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표시행위 그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³²⁾

따라서 대상 판결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보험설계사에게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하였을 때 특별히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담당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달라고 언급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자가 표시한 대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대하여만 이러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동일한 보험자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때에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느 하나의 보험계약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나머지 다른 보험 담당자에게도 이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대상 판결의 경우에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담당자인 보험설계사에게만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민법상 표시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절충적 입장을 관철한다면 보험계약자가 표시한 내용 그대로 효력이 발생할 뿐이고,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통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텐데, 자동차보험에 국한된 통지의 효력이 상해보험에 관한 통지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으로 의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대상 판결에서처럼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사실이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문서화된 이후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의 담당자가 이러한 데이터를 접하여 직업변경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이는 피고가 원고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통지에 의하여 지득하게 된 사실이 아니라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인지하게 된 사실이므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직업변경 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동일한 보험자를 상대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모든 사안에서, 보험자가 이와 같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게 된 위험변경증가 사실에 대하여도 대상 판결의 사안과 동일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형평을 잃은 판단이라고 할 것이다.

32) 박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2019), 306면.

(4) 보험계약자의 악의에 의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는, 원고가 2006. 6. 26. 피고를 상대로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10.경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2017. 10. 13.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피보험자의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7. 10. 24. 피보험자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운전자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사안이다.

2) 대상 판결의 검토

원고는 2006. 6. 26.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경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되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원고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2015. 10.경부터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한 2017. 10. 24.까지 거의 2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단처럼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면, 원고는 거의 2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상 사고발생의 위험률보다 낮은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 보호를 받은 것이고, 피고는 2년 전에 이미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자는 이익을 향유하고 보험자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등 공정하지 못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불균형이 야기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대법원의 판단처럼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한 것이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면, 예컨대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이 중에서 선별적으로 어느 하나의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하더라도 모든 보험계약에 관하여 동일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자

신의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호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만한 통지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확률에 따른 보험료 산출을 위해 마련된 위험변경증가 통지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보험의 선의계약성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이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되면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아져서 이를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인식은 하고 있을 것이며, 특히 대상 판결의 사안처럼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위험변경증가 사실의 통지를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도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2015. 10.경부터 그러한 통지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통지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통지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를 통지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 감액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대상 판결과 유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자가 계획적으로 동일한 보험자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험변경증가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보험료를 조금 인상토록 하면서,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이를 통지하지 않아서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억지토록 한 경우에도, 양 보험계약에 대하여 모두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는 등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보험 보호를 받게 소위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상대방이 상이한 보험자이건 동일한 보험자이건 모두 같은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여,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각각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5) 보험금에 비례하는 “보험료 산출”의 균형성

1) 문제의 제기

보험계약에서 보험료의 책정은 부보한 위험의 사고발생 가능성을 산출한 보험요율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인수한 보험의 사고발생 가능성은 당해 보험의 보험료 산출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³³⁾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하는 순간은 물론이고 보험기간 중에도 보험자가 부보한 위험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후자에 해당하는 의무가 바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발생한 현저한 위험의 증가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부보한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저렴한 보험료를 받으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보험유율 산출에 있어서 공정성 요건이 몰각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과도한 보호를 받으면서 보험자는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는, 보험자에게 명시적인 통지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최대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대상 판결의 검토

대상 판결의 경우, 피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상 소외인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에서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하고 당해 보험의 보험요율을 조정하여 보험료를 증액하였는데, 당시 보험설계사는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 이외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도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를 통해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최초 보험증권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직업이 기재되어 있던 점

33)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지켜야 하는 3가지 기본원칙으로 ‘충분성의 원칙’, ‘비과도성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공정성의 원칙”이란, 보험요율은 요율산정시 위험 대상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보험료의 차별은 보험 수리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보험요율을 위험별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업변경 사실의 통지 당시 보험계약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직업변경을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의 담당자에게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한 이후 당해 보험의 보험료가 증액되어 기존의 보험료보다 증가된 금액을 납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통지되었더라면 당해 보험의 보험료도 당연히 증액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던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여 피고에게 재차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함이 옳은 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의해 증액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도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는 기존의 금액을 그대로 납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증액을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행태는 아닌지 의심이 들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태로 말미암아 피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직접적으로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보험료 증액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액하지 못하여 위험의 개연성 증가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입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가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기존에 약정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상 판결의 경우, “이 사건 운전자보험”에 대하여만 직업변경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이러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대상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 피고에게 직접적으로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책정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위험으로부터 야기된 인과관계 있는 사고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원래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모두 수령하게 되었는데, 이는 보험료와 보험금의 비례 원칙에

만하는 결론으로서 문제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보시킨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피고는 자신이 인수한 보험에서 사고발생의 개연율에 따른 보험료를 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부보된 위험률을 하회하는 보험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인수한 보험의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를 수령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상 판결처럼 부보된 위험을 하회하는 저렴한 보험료를 받으면서 변경 내지 증가된 위험을 모두 담보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릇된 판단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직업변경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6)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내포된 “효과의사”에 따른 효력

1) 문제의 제기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사실을 ‘운전자보험’의 담당자에게만 통지하고 ‘상해보험’의 담당자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는 경우는 통지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운전자보험의 담당자에게 “상해보험에 관한 직업변경의 통지도 포함된다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이고, 둘째, 운전자보험의 담당자에게 “상해보험 담당자에 대하여도 이러한 통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한 경우이다. 즉 “전자”의 경우는 ‘상해보험’의 담당자가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간접적이거나 알 수 있는 상태이므로, ‘상해보험’에 관한 직업변경의 통지 여부는 각각 다르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대상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운전자보험’에 관하여 한 직업변경의 통지는 “전자”의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자”에서의 통지와 “후자”에서의 통지는 그 구체적 내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통지의 여부에 따른 법률효과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2) 대상 판결의 검토

“전자”의 경우는 보험자가 ‘상해보험’에 관한 통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 직업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증액할 여지가 없는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는 당해 보험설계사가 보험자에게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함께 통지한 것이라고 전달을 하였으면 보험자는 위험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반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하나의 보험에 대하여만 부분적으로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나머지 보험에 대하여는 통지의무 해태를 문제 삼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비록 하나의 보험에 대하여만 통지를 하였더라도 나머지 보험에 대한 통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성의를 다한 것이어서 통지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용이하지 않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직업변경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이러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상해보험’의 담당자가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담당자를 매개하여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간접적 내지 우회적으로 인식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내심적으로 갖는 진의에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은 물론이고 ‘이 사건 상해보험’에 대하여도 직업변경의 통지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법적 전제하에 판단하는 것은 심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보험금의 감액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이라 할 것이다.

(7) 실무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절차”의 불완전성

1) 실무상 통지 절차의 불완전성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자에게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서면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알려주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용이하게 통지하는 절차나 방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계약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계약을 주선한 보험설계사 이외에 보험자 내부의 업무 담당자를 알 수가 없어서 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도와준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하게 될 터인데, 보험설계사에게는 이러한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서 이들에게 통지를 하더라도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대부분 ARS 전화 방식으로 응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ARS 응답을 기다리면서 통지를 하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ARS 응답의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느 부서에 통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통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통지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대상 판결의 검토

대상 판결의 사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보험자에 대하여 시간의 간격을 두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통지하고 싶어도 어느 보험을 어느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계약하였는지 일일이 기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며,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각 보험계약을 서로 다른 보험설계사와 체결하게 되면 어느 하나의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한 보험설계사를 기억하여 특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은 일이다.

현실적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보험계약자는 위험변경증가 사실의 통지를 하고 싶어도 시스템적으로 간편하게 이를 진행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통지를 지연하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것이고,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처럼 하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만 통지를 하고 나머지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통지를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용이하게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ARS 전화 상담 창구에 통지를 수령하는 담당자와 연결하는 회선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를 사전에 보험계약자 등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보험설계사에게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위험변경증가 사실의 통지수령권을 부여함으로써, 양심적인 보험계약자가 이러한 통지를 하고

싶어도 절차의 번잡이나 권한의 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된 통지를 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등이 언제든지 간편하게 위험변경증가 사실의 통지를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IV. 결 론

본 연구의 대상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나의 보험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이들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동일한 통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시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시하는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의 판단기준은 재고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원심 판단의 내용과 근거를 비교 분석하면서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관념의 통지의 대한 민법상 표시주의 이론의 적용”과 관련하여, 민법상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하여는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관념의 통지에도 의사표시 이론이 적용되므로, 보험계약자가 ‘운전자 보험계약’을 중개한 보험설계사에게 관념의 통지의 일종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하였을 때 ‘상해보험계약’의 담당자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은 이상, 보험계약자가 표시한 대로 ‘운전자 보험계약’에 대하여만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사실이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문서화된 이후 ‘상해보험계약’의 담당자가 이러한 데이터를 접하여 직업변경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의 적극적이고 명시적인 통지에 의하여 지득하게 된 사실이 아니라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인지하게 된 사실이므로, 원고가 능동적으로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직업변경 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둘째, “보험계약자의 악의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2015. 10.경부터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한 2017. 10. 24.까지 거의 2년 동안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대법원의 판단처럼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위험변경증가의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면, 원고는 거의 2년의 기간 동안 ‘상해보험계약상 사고발생의 위험률보다 낮은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 보호를 받은 것이고, 피고는 2년 전에 이미 ‘상해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악의적인 불통지로 인하여 자신은 이익을 향유하고 보험자는 불이익을 감수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셋째, “보험금에 비례하는 보험료 산출의 균형성”과 관련하여, 원고의 입장에 서는 ‘이 사건 운전자보험’의 담당자에게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한 이후 당해 보험의 보험료가 증액되어 기존의 보험료보다 증가된 금액을 납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해보험’에 대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통지되었더라면 당해 보험의 보험료도 당연히 증액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던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여 피고에게 제차 직업변경 사실을 통지함이 옳은 처사일 텐데, 원고는 ‘이 사건 운전자보험’에 의해 증액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도 ‘이 사건 상해보험’에 의한 보험료는 기존의 금액을 그대로 납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해보험’에 의한 보험료의 증액을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행태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행태로 말미암아 피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직업변경 사실을 직접적으로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보험료 증액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액하지 못하여 위험의 개연성 증가에 상응하는 보험료 수입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가된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기존에 약정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이러한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에 내포된 효과의사에 따른 효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가 직업변경 사실을 ‘운전자보험’의 담당자에게만 통지할 때는, i) “상해보험에 관한 직업변경의 통지도 포함된다고 언급하지 않은” 경우와, ii) “상해보험 담당자에 대하여 이러한 통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보험자가 상해보험에 관한 통지 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직업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증액할 여지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자에게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함께 통지한 것이라고 전달하면 보험자는 위험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반영할 수 있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운전자보험’에 관하여 직업변경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통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상해보험’ 업무의 담당자가 ‘운전자보험’ 업무의 담당자를 매개하여 피보험자의 직업변경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인식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내심적으로 갖는 진의에는 ‘운전자보험’은 물론이고 ‘상해보험’에 대하여도 직업변경의 통지를 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법적 전제로 통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섯째, “실무상 위험변경증가의 통지 절차의 불완전성”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주선한 보험설계사 이외에 보험자 내부의 업무 담당자를 알 수가 없어서 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러한 보험설계사에게 위험변경증가 사실을 통지할 것이므로, 보험설계사에 대하여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수령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통지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ARS 응답을 기다리면서 통지를 하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느 부서에 통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통지할 수 없는 고충이 있으므로, 보험자는 ARS 전화로 응대할 때 통지수령의 담당 부서로 직접 연결하여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9판, (2019).
- 손주찬, 「상법(하)」 제9정증보판, 박영사, (2001).
-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6).
- 양승규·장덕조 공저, 「보험법의 쟁점」, 법문사, (2000).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공저, 「보험·해상법」 제8판, 박영사, (2008).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9판, 박영사, (2007).
- 지원립, 「민법강의」 제4판, 홍문사, (2006).
-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제15판, 박영사, (2008).
- 강대섭,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와 계약해지권”, 「상사판례연구」 제25집 제3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 김원규, “보험계약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재해석과 입법과제”, 「법학연구」 제48집, 한국법학회, (2012).
- 김원규, “상법상 약관교부·명시의무와 고지·통지의무와의 관계”, 「한양법학」 제22권 제1집, 한양법학회, (2011).
- 맹수석,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제도의 법적 쟁점-일사전속제 및 교차모집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제21권 제3호, (2007).
- 문영화,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 해태를 사유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약관의 효력”, 「대법원판례해설」 제44호, 법원도서관, (2004).
- 양석완, “보험계약에 있어서 위험의 변경·증가에 관한 법적 쟁점”, 「상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한국상사법학회, (2011).
- 오창수, “타보험계약 및 중복보험의 고지·통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해지 -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변호사」 제33집,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 이원석, “주관적 위험변경증가와 상법 제652조 및 약관설명 의무”, 「고요한 정의의 울림 - 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5).
- 한창희, “위험변경증가에 대한 통지의무의 위반과 보험자의 책임”, 「상사판례연구」 제4권, 박영사, (2000).

<Abstract>

A Criteria for Judging the Performance of the Duty to notify Increase in Risk prescribed in Article 652 of the Commercial Act

Kim, Dong Min^{*}

The contents of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s commentary, are as follows. On June 26, 2006, the plaintiff (the policyholder) entered into a "Accident Insurance Contract" with the defendant (the insurer) with the insured's occupation set as 'general police officer'. On October 2015, the insured's occupation was changed to 'truck driver', but the defendant was not notified of this fact. On October 13, 2017,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Driver's Insurance Contract" with the same insured with the defendant. Afterwards, on October 24, 2017, the plaintiff confirmed that the insured's occupation was listed as 'general police officer' on the newly issued driver's insurance policy, and notified the insurance planner who brokered the "Driver's Insurance Contract" that the insured's occupation had been changed to 'truck driver'.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judged whether this notification could be considered as notification of the increased risk to the insured in relation to th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In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presented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the policyholder had fulfilled the duty to notify of increased risk in relation to each of the insurance contracts when the policyholder entered into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for the same insured with one insurance company, and acknowledged that since the notification had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Driver's Insurance Contract", the same notification had also been made in relation to th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Ph. D.

However, since there are issues to be reconsidered regarding the standard for judging the duty to notify of increased risk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this paper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subject judgmen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 and basis of the appellate judgment focusing on the following issues.

First, in cases where the insurance policy stipulates that the insur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if the insured party does not notify the fact of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we examined whether the insurer may cancel the insurance contract even if it did not explain this to the insured party in advance. Second, when the policyholder notifies the insured of a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such as a change in the insured's occupation, we examined how and to what extent the policyholder must inform the insurer of this fact. Third, when the insurer becomes aware of the insured's increased risk in a roundabout and indirect manner, we analyzed whether the policyholder's duty to notify the increased risk can be considered fulfilled through this recognition.

This paper specifically examined the following issues: i) the scope of the insurer's duty to specify and explain the terms and conditions, ii) whether the theory of indication under Civil Act applies to the notification of the increased risk, iii) the possibility of moral hazard due to the insured's bad faith, iv) whether the calculation of insurance premiums in proportion to the insurance money is balanced, v) the difference in effect according to the intention to effect contained in the insured's notification, vi) the incompleteness of the notification procedure for increased risk change in practice. Based on this, we analyzed the legal issues based on the general theory of Civil Act and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in Commercial Act, and presented the criteria of judgment for reasonable resolution.

Key Words : Accident Insurance, Driver's Insurance, Insurer, Policy holder, Insured, Beneficiary, Duty to explain, Duty of Disclosure, Duty to notify Increase in Risk